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748,969	13,042,469
일반회계	413,894,404	12,416,832
특별회계	20,854,565	625,637
공기업특별회계	12,347,643	370,429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347,643	370,429
기타특별회계	8,506,922	255,2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2,321	16,87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58,641	31,7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00,000	27,000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48,060	7,4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37,900	172,13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70,1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